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14:00

NH협카드-SKT, 인공지능 플랫폼 MOU

NH협카드와 SK텔레콤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농협은행 본사에서 'NH협카드-SK텔레콤 간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카드서비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NH협카드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부턴 진행 중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SK텔레콤의 인공지능 플랫폼 'NUGU'를 활용한 카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강현 NH협카드 카드디지털사업단장(오른쪽)이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과 포즈를 취했다. /NH협카드



코스콤-IBK투자증권, 레그테크 서비스 확대

코스콤과 IBK투자증권은 자본시장 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성화를 위해 RegTech(레그테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양사는 레그테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식을 갖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왼쪽 두번째)이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레그테크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가동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롯데주류, 식목일 맞아 '반려나무' 입양 이벤트

롯데주류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반려나무' 입양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임직원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태환 롯데주류 대표이사(가운데)와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주류



라이나전성기재단, 사랑 있는 동백나무 심기 행사

라이나생명에서 설립한 공익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에서 희망실버케어센터의 어르신들과 함께 블루베리 묘목을 심는 행사를 가졌다. 뇌건강에 좋다는 동백나무를 노인성 질환 전문시설인 희망실버케어센터에 요양중인 어르신들과 함께 심고 이를 지자체에 기증하는 행사였다. 2013년 설립된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시니어(노년층)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새 총회결의로 종전결의 뒤집을 수 있나?



**여지운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A조합에서는 조합원인 B의 주장이 관철된 총회 결의가 있었다. B는 흡족한 결의의 내용이 존속하리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해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총회에서 종전 결의의 내용이 뒤집히고 말았다. B는 이러한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는 종전 결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 결의를 신뢰해온 조합원들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조합은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결의를 뒤집을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가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것이 적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

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결의가 상위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보자.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상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라면, 그 새로운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두13463 판결).

다음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위법한지는,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이 무엇인지를 따진 다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두3918 판결).

위 대법원 2016두35281 판결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자. A조합은 상가조합원들로부터 구성된 상가협의회의와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상가독립정산제란 상가조합원들과 아파트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 사이

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각자 개발이익 등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상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조합은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위 계약을 추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그 후 상가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총회 결의는 위법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가독립정산제를 철회,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지,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이 보호할 만만 가치가 있는지, 상가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상가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쉽게 말해 새로운 총회 결의에서 종전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본 후, 그 위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새로운 총회로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한다면, 진행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새로운 총회 결의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중기부, 남성·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 선정

2대에 걸쳐 자동차 오디오 제조·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53살 기업 '남성'과 송·배전선로 부품 분야에 매진해 온 56살 뿌리기술 전문기업 '세명전기공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남성과 세명전기공업을 제3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을 발굴해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6년 중기부

가 도입한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장수 사업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 등 명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됐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인사

- ◆**우리종합금융** ◇신규 선임 △투자금융본부 상무 연현모 △기업금융2본부 상무 윤석규
- ◆**부산대학교병원** △사무국장 직무대행 김재석 △진료처장 직무대행 정성운 △기획조정실장 김창원
- ◆**부국증권** ◇부문 대표 △IB사업본부대표 부사장 박준준 ◇본부장 △IB사업본부장 전무 김훈 △채권금융본부장 전무 이동욱 △자본시장본부장 전무 이상인 △법인영업본부장 전무 공일환 △채권영업본부장 상무 왕진기 △FICC본부장 상무 송정우 △투자금융본부장 상무보 정석문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이사보 윤성택
- ◆**서울경제신문** △는설위원 김광덕

부음

- ▲ 이영호(전 성균관 부관장)씨 별세, 이옥(강

- 남삼성치과 원장)·이숙·이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위원)·이정씨 부친상, 이한명(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조철호(㈜동우 국제 대표이사 회장)씨 장인상 = 3일 오후 1시 25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2-2227-7590.
- ▲ 류시욱씨 별세, 김원진(전 안동 북주초등학교 교장)·철진(전 삼성전자 전무, 평택국제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안유기(경북도청 식품의학과)씨 장모상 = 3일 오후 3시 51분,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5분향실, 발인 5일 오전 8시. 054-850-6440.
- ▲ 홍모열 씨 별세, 김준호(전 대전대 교수)·김을호(전 한겨레 화백)·김충호(조세심판원 심판관)·김중호(조선비즈 부국장)씨 모친상, 김홍수(희망제작소 실장)씨 장모상, 김부수·김승아(정부법무공단 변호사)·유수진 씨 시모상 = 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2258-5940.

- ▲ 이도성(전 삼성화재 상무)씨 별세, 이희중(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이희평(홍대부중 교사)·이정훈(티오티건축 대표)·이화진(주부)씨 부친상, 김미도(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김향미(주부)·정태희(신영외과류 마스터 디자이너)씨 시부상, 모성진(비스프로컨설팅 부장)씨 장인상 = 2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원자력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970-1541.
- ▲ 강양희 씨 별세, 박상준(STX 대표이사, STX마린서비스 대표이사)·현미·영미·미경 씨 모친상 =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실, 발인 5일 오전. 02-3010-2000.
- ▲ 김태영씨 별세, 최종후(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최중수(유선통신 대표)·최종원(토이스토리 대표)씨 모친상, 정성희(블루리본 학원 대표)씨 시모상 = 3일 오전 5시 2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15.